

학칙 개정(안) 신·구 대비표

▶ 개정 사유: 제적사유 보완

현 재	개정 안
<p>제34조(제적) ①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총장이 이를 제적 처분 할 수 있다. «2013.10.1. 개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휴학기간 종료 후, 개강일로부터 수업일수 1/4이 넘도록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수업일수 1/4을 초과하여 무계출 결석한 자. 3. 정당한 사유없이 결석이 무상한 자. 4. 타교에 입학한 자(이중학적을 가진 자) 5. 품행이 심히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6. 정당한 사유없이 매학기 소정 기간내에 등록을 필하지 못한 자. 	<p>제34조(제적) ①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총장이 이를 제적 처분 할 수 있다. «2013.10.1. 개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휴학기간 종료 후, 개강일로부터 수업일수 1/4이 넘도록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수업일수 1/4을 초과하여 무계출 결석한 자. 3. 정당한 사유없이 결석이 무상한 자. 4. 타교에 입학한 자(이중학적을 가진 자) 5. 품행이 심히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6. 정당한 사유없이 매학기 소정 기간내에 등록을 필하지 못한 자. 7. 사망 등으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인정된 자. «2026.6.1. 신설»
<p><신설></p>	<p>부 칙 1.(시행일) 이 학칙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p>